

대부제도(주택자금)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제도(주택자금 일반 1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2억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운영기준

구분	내용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10일(신청 시 계약서만 첨부) ▪ 신청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퇴직 3년 미만인 경우 신청불가 - 보증보험 또는 연대보증인을 통해 대부금이 회수된 직원은 대부금 회수일로부터 5년간 신청제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5일경(제출서류는 개별안내 예정 → 선정 및 채권확보서류 제출) - 연령별 이원화(만40세 미만, 만40세 이상)하여 선정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말일, 별도계좌로 지급
대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억원(주택마련/임차 구분 없음).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한해 최대 2억원 - 상환여부에 관계없이 최초 대부액 기준 - 주택대부 한도금액 1억원을 모두 대부 받고 전액 상환한 때에는 직전 주택대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1회에 한해 대부기회(대부 한도 1억원)를 재부여
신청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마련/임차(임차증액 포함). 임차증액은 증액금액 내에서만 신청가능 - 우선선정 사유 : 직원 결혼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채권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대보증 또는 보증보험 - 연대보증 설정가능 한도는 3천만원까지 가능 * 주택자금, 구(가계안정/긴급생활/자녀학자금)대부 합산금액으로 상환금액과 무관
상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시 선택(단, 중도변경 불가) : 12년 또는 13년(거치기간 1년 포함) 단,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2년 이하인 경우 잔여기간 내 연 단위 상환기간 설정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환기간 중 원금균등분할 상환(매월 급여공제) ▪ 무급휴직, 재직전출 등으로 급여공제 불가한 경우, 매월 상환안내문자를 참고하여 개별입금 - 매월 이자계산일수, 미상환잔액의 차이로 매월 입금액 상이(자동이체, 상환유예 불가) ▪ 퇴직 시 미상환 잔액은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일시상환(별도 입금)
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연체이자율 20%)

2 대부자격조건

구분	내용
우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결혼 시 주택 구입 또는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신고 전 신청자 : 대부금 지급 후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혼인신고 후 신청자 :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신청일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3개월이내여야 함) • 생애최초 주택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배우자 전 생애기간 무주택 : 생애 전기간의 [전국 자치단체기준] 재산세(주택, 건축물) 과세증명서 제출(주택소유에 따른 재산세 납부확인용)
기본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 임직원이 주택(오피스텔 포함) 매입 또는 임차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이 국내에 없는 경우 - 공시가격이 수도권 1.3억원 이하, 비수도권 0.8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 • 본인, 부부공동, 배우자 명의까지 신청 가능(직계존비속 또는 부부간 거래 신청 제외) • 주택계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신청 가능(단, 분양은 등기완료일까지 신청 가능) • 동일주택에 대해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단, 기존 임차주택을 매입하거나 증액할 경우 중복신청 가능) •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퇴직 5년 미만자, DC전환자 신청 시 - 퇴직연금을 DC전환할 경우, 배우자 명의 계약으로 대부 신청한 경우 - 주택자금/가계안정자금/긴급생활자금/자녀학자금 대부 합산 금액의 연대보증금액이 누적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상환금액과 무관) -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대부금이 회수된 경력이 있는 직원 • 연대보증인 조건 : 근속 1년이상,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C전환자 불가 • 연대보증인이 퇴직한 경우는 2개월 이내 채권확보 변경 의무 (미처리 시 일시 상환 의무) • 기타 선정제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설계휴직(창업지원휴직 포함) 중 무급기간인 경우 - 부부사원에 대해 1인만 신청가능(상호연대보증 불가) - 급여압류,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인 직원은 기존 대부 상환완료 시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ERP > 복리후생 > 신청 > “대부(주택)”

4 제출서류 :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분당본사타워 2층 업무지원센터
주택자금 담당(우편번호 13606)

제출시기	주택마련	주택임차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사본 - 직원 또는 배우자 명의, 직원·배우자 공동명의 	좌동 (임차증액일 경우 신·구 계약서 사본)
선정 후 채권확보 시	[공통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 신청서 원본(서명필수) ▪ 직원 및 배우자의 최근 1개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무주택 限 제출, 주택/건물 대상 재산세 항목만 발급 ▪ 보증보험증권 또는 연대보증서류 	해당 없음
	[생애최초 주택구입 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및 배우자의 생애 전 기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 건물 대상 재산세 항목만 발급 ※ 필요 시 신청사항 검증을 위해 등기부등본 추가 요청 	
	[직원 결혼 목적 주택 구입·임차 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신고일이 대부금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 전 신청자는 혼인확인 가능서류 (예식장 계약서 가능, 청첩장 불가) 	
대부금 수령 후 3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 이전한 등기부등본 또는 대부금 사용(이체) 영수증 ▪ 직원 결혼목적 주택 구입·임차 사유로 주택자금 신청한 경우 대부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신청시 미제출자에 한함) 	본인 주소 이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대부금 사용(이체) 영수증



대부금 수령 후 기한 내 최종서류 미제출한 경우는 대부금 전액 일시 회수

- ▶ 부당대부로 확인될 경우 일시 상환 및 복지수혜 5년간 중지
- ▶ 기한 내 미상환할 경우 연체이자율 20% 적용, 채권회수 조치(보증보험청구 등)
- ▶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되어야 인정가능하며, 미선정 시 6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는 복사본으로 보관하여 활용 가능

5 대부선정기준표

① 근속기간

1년이하	3년이하	5년이하	7년이하	10년이하	15년이하	20년이하	20년초과
3	4	5	6	7	9	11	13

② 주택소유여부

有주택	無주택
0	15

③ 대부금 수혜금액 (대부종류 전체, 상환금액 무관)

미수혜	1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	3천만원이하
30	27	24	21
4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6천만원이하	7천만원이하
18	15	12	9
8천만원이하	9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1억원초과
6	3	1	0

④ 직급

Pay-Band	G5	G4	G3	G2	G1
배점	2	4	6	8	10

※ 상무보의 경우 2점으로 하며, 그 외에는 6점으로 적용

⑤ 가점부여

장애(직원)	표창(2개이상일 경우 높은 점수 인정)				다자녀 (3인이상)
	본부장	부부장	CEO	KT인賞	
1	1	2	3	4	3

⑥ 동점자 우선순위 : 저직급 > 수혜실적 > 주택소유여부 > 근속기간

⑦ 신규자와 재기회부여자를 구분하여 선정

⑧ 연령별 이원화(만40세 미만, 만40세 이상)하여 선정

6 문의처

업무지원센터 / welfare01@kt.com 또는 welfare02@kt.com / T. 031-727-4231, 4234

7 Q&A

Q1 2022년 대부한도가 1억으로 늘어났는데, 2021년 7천만원을 대부 받은 계약건으로 다시 잔여한도 3천만원을 추가 대부 받을 수 있나요?

A1 · 불가. 동일계약으로 대부신청은 1회만 가능

Q2 대부 재기회로 1억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주택자금 대부 재기회 조건은 주택자금 대부한도 1억원을 대부 받고, 1억원을 전액 상환한 경우 1회에 한해 부여
(단, 직전 주택대부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경우 재부여)
- **Case1 : 주택대부 7천만원 상환완료, 22년 주택대부 3천만원 수혜 후 상환완료**
☞ 가능. 22년 주택대부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가능
- **Case2 : 주택대부 7천만원, 구.가계안정자금 3천만원 수혜 후 상환완료**
☞ 불가. 주택대부 한도 1억원을 채우지 않아 재기회 불가
- 다른 종류의 대부수혜는 주택 대부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 **Case3 : 주택대부 재기회 7천만원 수혜 후 상환완료**
☞ 불가. 주택대부 재기회는 1회에 한해 부여하므로 재기회 불가

Q3 대부금액에 따른 월 상환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상환기간별 월상환금액 (단, 실제 월별 이자계산일수에 따라 금액 일부 차이발생)

상환기간	최초 월상환금액(원금+연1%이자 포함)	
	1억원	2억원
12년	776,600원	1,553,000원
11년	839,700원	1,679,000원
A3 10년	915,500원	1,831,000원
9년	1,008,100원	2,016,000원
8년	1,123,800원	2,247,000원
7년	1,272,600원	2,545,000원
6년	1,471,000원	2,942,000원
5년	1,748,800원	3,497,000원

Q4 계약일자가 2021년이고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022년 시행기준인 1억원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2억원을 대부 신청 가능한가요?

A4 · 가능. 주택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분양은 등기완료일까지) 신청가능